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요청

□ 신청 취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후 반려되어 부족한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폐차를 하면 된다는 안내에 따라, 보완 서류 발송 후 폐차·자진말소를 진행했는데 지원금 대상에 미선정됨
 - 조기폐차 지원금 선정 전 폐차 하였다는 이유로 미선정된 것은 부당한 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요청 고충민원 제기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6개월 소유 등 제반 사항검토 후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 통보일 이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정상가동’ 판정)을 완료 하고 폐차·자진말소를 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보조금 지원금 대상 선정전 폐차·자진말소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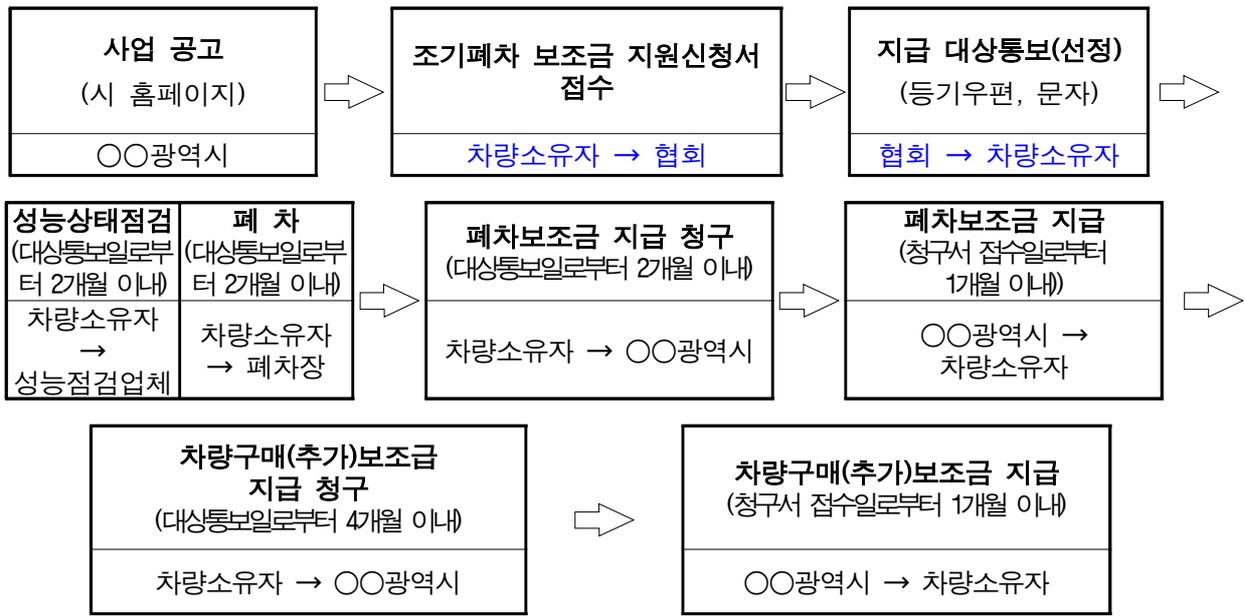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2. 11. 23. 피신청인 부서(○○광역시 ○○○○과)를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려 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절차를 알려주며,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로 접수’할 것을 안내하였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 사업기간 : 2022. 2. 24. ~ 2022. 11. 30.
- 총사업비 : 9,857백만원(국 5,914 시 3,743)
- 주요내용 :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및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 구매 시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 사업절차



- 신청인은 같은 해 11. 24.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관련 서류를 등기 (등기번호 *****-****-****)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 소유 ○○**○**** ○○○ ○○차량을 폐차(자진말소) 하였다.
- 같은 해 12. 1. 신청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선정 전 폐차를 사유로, 폐차 보조금 지원 미대상 통보를 받았다.

□ 관계 법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특정경유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조기폐차 신청)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보조금 지원 신청 후 폐차를 진행한 점으로 보아 절차를 알았다면 그 처리절차에 따라 폐차하였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며, 신청인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기록과 차량고장으로 인한 보험사 출동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폐차 직전까지 정상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인정되며
-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을 구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성능검사 회피를 위해 고의로 차량을 조기폐차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민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국가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 보전이란 정책적 목적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은 2022. 12. 31. 기준, 이 민원 사업에 4,373대, 약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해 약14억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았을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민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존 신청자 등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에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민원 제목 : ○○○ 진입로 공유수면사용료 부과 취소 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과 일반인 등이 ○○ ○○군 ○○면 산○○○ 소재 ○○○의 진입로 겸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사유지(같은 리 산○○○, 산○○○, 산○○ 등)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군에서는 현행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리 ○○○○ 국토부 하천부지 ○○○m²(이하 '이 사건 민원하천'라 한다)를 신청인의 진입로라 보고, 신청인에게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 취소 요구 고충민원 제기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신청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당시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상 현재 확인되는 지적불부합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사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다.
- 현재 지적불부합에 따라 지적이 상이한 부분은 지적부서와 협의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추후 지적불부합에 따른 문제가 해결된 후 현재 사용현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 10월 이 사건 민원하천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28.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였고, 같은 해 10. 30. 신청인에게 허가 사항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반복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아 오고 있다.

-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한 국유지인 이 사건 민원 하천은, 신청인 소유 〇〇〇의 진입도로 용도로 허가를 하였으나 지적공부 상 신청인의 건축은 이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〇〇〇의 진입도로와 무관한 곳에 위치하여
 - 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하천을 진입도로로 점용·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민원하천은 신청인이 점용·사용을 신청한 〇〇〇 진입로 상 하천의 다리와는 150m 이상 떨어져 있다.

□ 관계 법령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제14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지적공부상 〇〇군 〇〇면 〇〇〇리 〇-〇번지 1,〇〇〇m²의 대표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민원하천에 대해서 〇〇〇의 진입도로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현실적 위치는 지적공부상 기재된 내용과 달리 같은 리 산〇〇〇 임야 4〇,〇〇〇m²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인이 실제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유지인 같은 리 산〇〇〇, 산〇〇〇, 산〇〇번지를 따라 흐르는 수류(이하“이 사건 점용 하천”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하천·호소·구거·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다는 이 사건 민원하천은 신청인이 실제로 점용·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므로, 점유·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하천의 토지는 그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어 국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공유수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한편, 피신청인은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허가한 사항이고, 지적불부합지라고 항변하나, 점유·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점유·사용 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어 위법을 피할 수 없고, 신청인이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과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 따라서, 소유권은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따라 지적이 확정되나, 기술적인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실적 경계에 의할 수 있는데, 지적불부합지는 인접 토지와 권리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등록된 토지의 면적, 경계, 위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토지의 진실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각 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또는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 이런 과정 없이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이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하천은 지적공부 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이고, 이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이 점유·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 ○○군 ○○면 ○○○리 ○○○○번지 진입로(6×46m), 암거(4×2) L=6m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